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고용서비스부

# Office of Paid Family Leave – Tax Division | 4058 Minnesota Avenue NE | Washington DC 20019

**PFL30**

# 참조: 이 양식을 완성하기 전에 UC30을 완료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양식 ID:  DOES-PFL30 | 근로자 분기별 기여 및 월급 명세서 | | 소인 날짜  (이 공간을 사용하지 마시오) | |
| 고용주 계좌 번호: |  | | 연방 EIN 번호: | |
| 분기 종료: | |
| 세율: |
| 2페이지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 | | |
| 1. 지급된 전체 임금 (이번 분기에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UC30, 2라인에 신고한 것과 같은 금액) $ 2. 기여 금액 (1라인 금액에 세율 0.62%(0.0062)를 곱한 것) $ 3. **더하기** 이자 $ 4. **더하기** 벌금 $ 5. **빼기** 승인된 입금액 $ 6. **총** 전체 송금액   (수표 또는 우편환 수령인은 “DC Treasurer”(DC 재무담당자)로 하십시오) $ | | | | |
| 상태 변경 | | | | |
| 7.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아래에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 | | | |
| 인증 | | | | |
| 본인은 이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및 첨부된 월급 명세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일절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이 공제되었거나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 | | |
| 서명: | | 전화번호: | | 날짜: |
| 이름(정자체): | | 직책: | | |

PFL30 개정 6/2019

# Office of Paid Family Leave – Tax Division | [does.opfl@dc.gov](mailto:does.opfl@dc.gov) | 202.899.3700

**안내 사항**

* 이 양식은 다섯(5)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용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다섯

(5)명 이상이면 온라인 신고 포털 essp.does.dc.gov를 이용해야 합니다.

* PFL30을 사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분기별로 UC30도 제출해야 합니다. PFL30의 주목적은 고용주가 해당 분기에 얼마의 PFL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고용주가 PFL30을 제출하여도 UC30을 이용하여 임금을 신고하는 것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UC30은 UI 및 PFL 프로그램 모두를 위해 임금 신고용으로 쓰입니다. UC30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PFL 벌금 및 이자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PFL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영업자이지만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자영업 수입 신고는 온라인 포털(essp.does.dc.gov)에서 PFL30S를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한 한(1) 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참가하려면, 모든 자영업 수입을 PFL30S에 신고하고 추가로 근로자의 임금을 UC30 및 PFL30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을 위해 매년 신고하는 세대 신고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PFL30H를 사용하십시오.

**1라인: 이번 분기에 지급한 전체 임금.** 이번 분기에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현금 외의 모든 형태로 지급한 모든 보수의 현금 가치를 포함하여 (세금 공제 전) 지급한 전체 임금을 기재하십시오. 이번 분기에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PFL30, 1라인에 신고된 금액은 같은 분기의 UC30, 2라인에 신고한 금액과 같습니다. PFL30, 1라인에 신고된 금액은 같은 분기의 UC30, 2라인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PFL30, 1라인에 신고한 금액이 UC30, 2라인에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DOES의 예외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 가이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oes.dc.gov에서 “PFL 적용 대상에서 예외 근로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예외 근로자 때문에 UC30, 2라인보다 PFL30, 1라인에 더 적은 금액을 신고했으나 그 예외 근로자 신고가 DOES에서 거절된 고용주는 해당 차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2라인: 기여 금액.** DOES에 내야 하는 PFL 세금 금액. 1라인의 금액에 0.0062를 곱하십시오.

예시: $100,000(1라인) \* 0.0062 = $620(2라인).

**3라인: 이자.** 신고에 따른 기여분이 적용되는 분기 다음 월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기여 금액의 월별 또는 한 달 내 해당 기간에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계좌에 모든 이자 금액은 DOES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십시오).

**4라인: 벌금.** 이자에 더하여, PFL30 또는 UC30 중 해당 분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적용되는 분기 다음 월말까지 기여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벌금으로 기여 금액의 10% 또는 $100.0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분기마다 PFL 세금과 UI 세금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에 모든 벌금 액수는 DOES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십시오).

**5라인: 승인된 입금액.** 귀하의 PFL 기여 금액에 합산될 승인된 입금 금액입니다. (계좌에 모든 입금 잔액은 DOES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십시오).

**6라인: 전체 송금액.** 2라인, 3라인, 4라인을 합한 후 5라인을 빼십시오. 수표 또는 우편환 수령인은 “DC Treasurer”(DC 재무담당자)로 하십시오. 고용주 계좌 번호와 분기/연도를 수표 또는 우편환에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은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PFL30 송부 및 PFL 우편납부 주소: Office of Paid Family Leave Tax Division

4058 Minnesota Ave. NE

Washington, DC 20019

**7라인: 상태 변경.** 마지막 신고 기간 이후 귀하의 고용주 계좌에 관한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빙 문서를 제출하십시오.